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KT 아현국사 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운용하던 사항을 중요통신시설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입법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3조의2 신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자격, 임기,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의 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의3 신설)

통신시설의 등급을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의 수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근거자료 제출 및 등급지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등급지정·변경 절차를 규정

다.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기준(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신설)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도록, 그 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전담부서·인력의 수행업무를 규정

라.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안 제28조의3, 안 별표1 신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마.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30조제4호 개정 및 제4호의2, 제5호 신설)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2 제2호 개정)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상 기준에 위반하여 통신시설을 관리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서비스 지역범위
2.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3. 상호접속 등 전체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의 수행 여부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분류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 등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한 통신시설 등급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한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 중 “5월 31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월 31일”을 “9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9월 30일까지 확정”을 “11월 30일까지 수립”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여야 하며,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 제출, 등급에

따른 관리조치

2.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3.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및 무선 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재난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 안전에 필요한 조치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

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 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

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제3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1조 중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자목, 차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하목, 거목 및 너목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아목을 각각 사목, 아목,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중전의 별표)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법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5호	1,500
--	--------------	-------

별표 2(중전의 별표)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1,500
--	--------------	-------

별표 2(중전의 별표)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0
---	--------------	-------

바.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
------------------------------------	--------------	-------

별표 2(중전의 별표)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	1,500
----------------------------------	--------------	-------

별표 2(중전의 별표)제2호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법 제48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 35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 의위원회는(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 전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 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 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 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
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서비스 지역범위
2. 수용 회선 수 또는 수용 기지국 수의 규모
3. 상호접속 등 전체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의 수행 여부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

분류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 등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한 통신시설 등급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한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

---7월 31일-----

-----.

② -----

----- 9월 30일-----

--.

③ -----

제4항-----
----- 11
월 30일---수립-----.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신 설>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용하여야 하며, 100억원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2인 이상의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총괄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 제출, 등급에 따른 관리조치
2. 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3.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복구대책,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

<신 설>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재난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및 통신시설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절차 등) ① 법 제40조의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 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0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⑨ 법 제40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송 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보 고 요구 및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한 검사	4.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 ----- -----
<신 설>	4의2.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 리상태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신 설>	5.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u> 와 같 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2</u> ----- -.

[별표 1]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제28조의3 관련)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40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중대성의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부과기준율,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2~0.5%	0.4~1%	0.6~1.5%
중대한 위반행위	0.1~0.2%	0.2~0.4%	0.3~0.6%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내	0.2%이내	0.3%이내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방송·통신
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전국 단위인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이상이나 전국 단위보다는 작은 범위인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시·도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

- 다) 나)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산상황,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감경

기준금액에 법 제40조4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및** 개선 여부,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 라. (생 략)		
마.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 등 금지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0
바.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
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0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	1,500
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특별 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1,500
차.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법 제48조제2항제6호	500
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 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	500
타.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 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500
파. 법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 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5호	1,500

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1,500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8호	500
너.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9호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434